

의안번호	제 298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**충청북도지사 · 충청북도교육감 및
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**

발 의 자	김영주 의원 등 6인
발의연월일	2019년 10월 25일

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의안 번호	29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10월 25일

발 의 자 : 김영주, 윤남진, 허창원, 임영은
이상식, 박형용

주 문

-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

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제2항 및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7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

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
-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73조

붙임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1부.

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제2항 및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73조 제1항에 따라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 충청북도지사·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◇ 출석일 :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개의일

- '19. 11. 8.(금) 14:00(제1차 본회의)

- '19. 12. 2.(월) 14:00(제2차 본회의)

- '19. 12. 16.(월) 14:00(제3차 본회의)

- '19. 12. 20.(금) 10:00(제4차 본회의)

※ 의사일정 변경으로 본회의 개의일이 추가 또는 변경될 경우 추가 및 변경된 날을 출석일시로 함

◇ 출석장소 : 충청북도의회 본회의장

◇ 출석이유

- 대집행기관질문·답변

- 주요 안건처리 등

◇ 출석대상

- 충청북도지사, 충청북도교육감

- 「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

· 부지사, 부교육감

· 도 본청 실·국·본부장, 정책기획관, 공보관, 여성가족정책관

· 충북도립대학교총장, 자치연수원장, 농업기술원장, 보건환경연구원장,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

· 도교육청 본청 국장, 감사관

※ 그 외 대집행기관질문 답변 대상자 포함

참고사항(관계법령)

□ 지방자치법

- 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

- 제73조(도지사·교육감 등의 출석요구)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·교육감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도지사·교육감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·교육감이나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, 출석요구를 받은 도지사·교육감이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에게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.
- ④ 도지사·교육감이 관계공무원에게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.